

##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

제정 2004. 1. 15 조례 제491호  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60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입장에서 민생관련생활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·해결하기 위한 용인시 시민감사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위촉)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용인시 시민감사관(이하 “시민감사관”이라 한다)을 위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제1항과 별도로 읍·면·동별로 위촉하는 시민감사관의 수는 전년도말 읍·면·동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20천인 이하는 1인, 50천인 이하는 2인, 100천인 이하는 3인, 100천인 이상은 4인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(별지 제1호서식)을 교부한다.

④ 시민감사관에게는 용인시시민감사관증(별지 제2호서식)을 교부하고, 용인시시민감사관증발급대상(별지 제3호서식)에 등재하여야 하며, 시민감사관은 임무수행시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3조(자격) 시민감사관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해당 전문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 있는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읍·면·동장과 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
3. 기타 지역시민으로서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신뢰성이 있는 자

제4조(임무 등)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

1.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의 신고
2.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
3.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치하여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제보
4. 공무원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
5. 필요시 종합·부분감사 참여
6.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

제5조(임기)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<개정 2005. 10. 5>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
4.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실비보상)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09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05. 10. 5>

위 축 장

주 소 :

성 명 :

「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」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용인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용인시시민감사관증(제2조제4항 관련)

NO	<b>용인시시민감사관증</b>	
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height: 100px; margin: 0 auto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<span style="font-size: 24px;">사 진</span> </div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사람은 「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감사관임을 증명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용 인 시 장</p>		

전 면

가로 8.5cm, 세로 5.5cm(사진 가로2.5cm, 세로3cm)

후 면

<b>주 의 사 항</b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증은 용인시시민감사관에서 해촉 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2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3. 이 증을 휴대한 시민감사관 또는 임무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인시 감사담당관실(☎ 031-324-20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

